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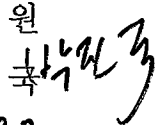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청강학원(청강문화산업대학)의 2011회계연도 연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2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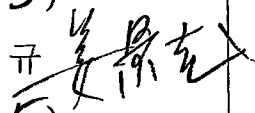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청강학원(청강문화산업대학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청강학원(청강문화산업대학)의 2012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2년 4월 9일

학 교 법 인 청 강 학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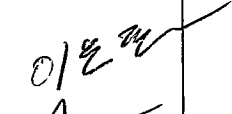
감 사 박 진 

(공인회계사번호 : 1193)

감 사 강 경 규 

(공인회계사번호 : 1525)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원 이 은 표 

직 원 김 산 